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6. 6. 24.)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종율]

(

목 차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8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개정이유

- 민선6기 후반기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 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여 능동적,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실과소명을 변경함(안 제3조, 제4장 제1절·제2절·제4절)
 -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실, 창조산업과 ⇒ 기업도시과, 승강기경제과 ⇒ 경제교통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녹색환경과 ⇒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문화센터 ⇒ 평생교육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나.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제7조, 제4장제1절·제2절·제4절)

-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획감사실 ⇒ 행정과
- 기업관련 업무 조정: 승강기경제과 ⇒ 기업도시과
- 교통 및 운수: 안전총괄과 ⇒ 경제교통과
- 문화예술행사 기획·유치: 문화센터 ⇒ 문화관광과
- 박물관, 문화원사, 무형문화재: 문화센터 ⇒ 문화관광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산업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평생교육진흥 및 기획: 창조산업과 ⇒ 평생교육센터
- 향노화산업: 창조산업과 ⇒ 농업기술센터
- 도서관 업무: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센터
- 청소년 업무: 체육청소년사업소 ⇒ 평생교육센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개정이유

- 조직진단 결과반영 및 민선6기 후반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 증원

- 현행: 598명(본청278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3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599명(본청263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8명, 읍39명, 면138명)

나. 연구직 정원: 1명 감원

- 현행: 6명(본청1명, 직속기관3명, 사업소2명)
- 조정: 5명(본청2명, 직속기관2명, 사업소1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민선6기 후반기 균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

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같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개정이유

-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금지에 따른 서식 변경

3. 주요골자

- 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개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나. 성별분리 통계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협의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5. 9. ~ 5. 29.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한 관련법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고,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 항목을 관련 서식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제안이유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

3.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4. 보고사항

- 가. 시설명: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 나. 위치: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다. 시설규모

구분	부지	건물			정원		비고
		계	공장	창고	종사자	근로자	
현황	6,612㎡	1,658㎡	1,200㎡	458㎡	7명	30명	

라.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소요예산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자.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지역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
 - 군 의회 주례보고(4. 19.) → 일반의안 상정 (6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16. 6월 중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6~9명)
- 위·수탁 협약체결: 2016. 6월 말
- 사업장 운영: 2016. 7. 1. ~ 2019. 6. 30. (3년)
- 예산조치: 2016년 본예산에 운영비 등 반영

5. 검토의견

- 본 사업장은 종이 포장박스 일체를 생산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서, 대부분 거창군 공동 브랜드 박스를 생산하고 있고,
-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에서 지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016. 6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 수탁을 포기한 상태이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은 가능하나 지난 4월 19일 주례회의 보고 후 본 안건 처리 전에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과 위·수탁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계획하게 된 부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

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토지매입 변경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제안이유

- 본 사업은 거창군의회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추가매입 토지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부지인 (구) 88고속도로 폐도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 등에 활용하기 위함.

3. 취득재산 현황

- 당 초: 6필지 2,574㎡

(단위: ㎡, 원)

구분	재산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지적	편입				
계		6필지		2,574	2,574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979-2	답	226	226	14,400	2015	공영차고지 주차면적 부족에 따른 부지매입	이 * 이
		거창읍 대평리 998-2	답	518	518	35,800			정 * 석
		거창읍 대평리 998-1	답	393	393	34,300			이 * 섭
		거창읍 대평리 997-2	답	567	567	36,700			정 * 석
		거창읍 대평리 980-2	답	349	349	14,900			이 * 정
		거창읍 대평리 981-2	답	521	521	35,800			김 * 순

○ 변 경: 6필지 2,574m² ⇒ 23필지 20,492m²

- 추가취득 재산의 표시: 17필지 17,918m²

(단위: m², 원)

구분	재산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지적	편입				
계		17필지		17,918	17,918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476-19	도	54	54	4,950	2016 ~ 2017	주차면적 추가확보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496	도	2,055	2,055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488-1	도	1,001	1,001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1138-8	도	1,742	1,742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394	도	6,310	6,310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1139-7	도	134	134	4,95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269-1	도	74	74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정장리 269	도	129	129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982-3	도	60	60	5,28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980-3	도	59	59	5,280			이 * 정외4
		거창읍 대평리 980-4	도	284	284	5,280			이 * 정외4
		거창읍 대평리 554-9	도	310	310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8	도	387	387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7	도	309	309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6	도	423	423	5,94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179-5	도	485	485	5,610			국토교통부
		거창읍 대평리 554-1	도	4,102	4,102	5,940			국토교통부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 위 취득재산은 거창군의회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 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부지인 (구)88고속도로 폐도를 추가 편입하여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며
- 주차장 확장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 매입하는 토지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동동근린공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5.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5. 31.

2. 제안이유

- 본 사업은 공원 내 공설묘지 및 농경지의 진입로가 없어 사유지를 거쳐 진입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와 잦은 분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취득재산 현황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토지	거창읍 대동리 산53	임	6,232	58,705	2016~2018	도로 개설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위 취득재산은 동동근린공원 내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이 인근 토지소유자와 잦은 분쟁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 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